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91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임종득 · 박형수 · 이준석
김기현 · 김기웅 · 서천호
강명구 · 강승규 · 한기호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 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 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 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